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의안 번호	2838
----------	------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 원안동의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1. 개정이유

- 삶의 형태 및 결혼가치관의 변화, 고령화 등 1인 가구 증가의 가속화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 발생에 따른 지원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해 정책 활성화를 통한 하남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목적 명확화(안 제1조)
- 나. 1인 가구 지원 대상 신설(안 제3조의2)
- 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23. 12. 11. ~ 2024. 1. 2. [22일간]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를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 를 “생계”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구축” 을 “구축 및 삶의 질 향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주거복지 등 1인” 을 “1인” 으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 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 으로 한다.

- ① 시장은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7. 생활 안전(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 가구 관련” 을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으로, “기관” 을 “기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 중 “지원시설” 을 “지원센터의” 로 한다.

제10조 중 “·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 을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여성보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여성보육과장 김 교 성
	팀장 직위·성명	여성가족팀장 윤 미 영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박 고 은 (790-56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 -----.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1. ----- 생 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삭 제>

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남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시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 시행 등) ① ----- 하남시 -----  
-----  
-----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 6. -----  
--- 구축 및 삶의 질 향상-----  
-----

③ (현행과 같음)

④ ----- 1인 -----  
-----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 -----  
-----.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  
-----  
-----  
-----.

제6조(실태조사) 시장-----  
-----  
-----  
-----.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업

2. 주거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  
----- 지원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7. 생활 안전(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제8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
4. (생략)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  
 -----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 기관 등-----.

1. 2. (현행과 같음)
3. ----- 지원센터의 -----
4.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  
 -----.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1인 가구 실태조사,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등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 제9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작성 대상임

4. 작성자 : 복지문화국 여성보육과장(김교성)

## 관계법령 발췌서

### 1 「건강가정기본법」[시행 2020. 5. 19. 일부개정]

####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